

IRIS 조문해석으로 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정동회계법인 위탁정산본부
최정길 본부장



질문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현금 또는 개인카드의 사용이 가능한지?



IRIS 답변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비카드 발급 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결의 등을 작성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이체증 등을 보관하여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마련이 필요함**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5항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로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공통계상기준 (연구공간 임차료)


질문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한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에서 "연구공간"의 의미는 ?


IRIS 답변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함**


관련 규정

 공간
임차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공통계상기준 (인적, 물적 구분이 곤란한 경우)



질문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IRIS 답변

- 두 기관이 출자 관계에 있거나 두 기관의 대표자 또는 최대 주주가 동일인이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등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인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6호는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관 전문기관과 협의 후 사용할 것을 권장함



관련 규정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범위(예시)〉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가 가족 관계인 경우
 ※ 가족 관계(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경우 형제자매)
-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거나 인접한 경우
- 인력, 자금, 영업시설이 공유되는 경우
- 100분의 30 이상의 출자 관계에 있는 경우
-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공통계상기준 (자체규정과 그외의 규정간의 차이)



질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됨'의 의미는?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을 위하여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와 유사 또는 동일한 용도로 연구개발기관의 다른 사업 등(그 외의 경우)의 추진에 적용되는 자체규정의 기준 단가 보다 높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임

* 부적절 사례 예시: 대학에서 교비회계에 적용되는 회의비 식비 기준이 '2만원 /1식,1인' 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3만원/1식,1인' 인 경우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3항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제2항에 따른 계상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아서는 아니 된다.

공통계상기준 (내부거래 중 정당한 사유)



질문

내부거래 중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는지?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제5호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사용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이익 추구 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한 연구개발비 사용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폭넓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계열사 등이 **단독 판매처인 경우** 외에도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외부에서 동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납기가 불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음**

인건비 (인건비 계상률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과 4대보험 기관부담금)



질문

협약 체결 당시 인건비 계상률을 100%로 산정하고, 과제 중간에 0% 또는 5%수 변경하여도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100%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① 협약 당시 인건비 계상률이 100%였으나, 과제수행도중 인건비 계상률이 100미만으로 변경되어도 협약 당시 100%으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여부?

② 협약당시가 아닌 과제수행도중(2년차~과제종료 까지)에 참여한 인원도 과제에 처음 참여한 시점(2년차)의 계상률로 계상이 가능한지?

EX) 2년차 처음 참여시점 100% → 과제종료 당시 10%여도 100%로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가능 여부?



IRIS 답변

혁신법 매뉴얼('24.4.) p.180 Q1.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상 규모는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문의내용과 같이 협약당시 또는 과제에 처음 참여한 시점 기준의 인건비계상률과 달리 **과제 수행 중에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어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률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혁신법 매뉴얼('24.4.) p.180 Q1.에 안내된 바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0%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과제에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용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Q1.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해당 과제의 인건비계상률이 변경되더라도 그 인건비계상률에 비례하여 그 규모를 책정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불가



질문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4항1호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변경되는 신규인력으로 인정되는 채용시기가 공고문에서 안내하는 채용일~공고일기간이 6개월 이내인 "2021.06.28~2021.12.28"에 포함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 계상과 관련하여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의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1.06.28.~2021.12.28.)에 채용된 연구자를 현시점에 신규인력으로 배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 1호

④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외부인건비 (외부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질문

외부인건비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A대학 소속에 고용계약되어있는 연구원(가칭: 홍길동)이 B대학 R&D 과제에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계상률 기준을 문의 드립니다

1. 원소속 기관(A대학)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월 400만원(근로계약 체결),
2. 타소속 기관(B대학)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월 200만원(근로계약x, 기타소득) 일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분모값의 급여액을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해야 하는것인지?**

1) 600만원(근로소득 400만원 + 기타소득 200만원)

2) 400만원(근로소득 400만원)



IRIS 답변

근로계약 외로 참여연구자가 소속 기관의 자체규정 등에 따라 승인받아 수행하는 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지급받는 인건비(외부인건비)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으로부터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에 해당 인건비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인건비계상률의 분모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600만원입니다.**



관련 규정

Q12. 참여연구자가 복수의 근로계약(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 총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인건비계상률 산식의 분모에 해당하는 급여총액에 두 곳의 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연구자가 지급받기로 한 급여총액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 현금인건비 계상)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중, 제 48조 (대학인건비 사용 기준) 4항 3조에 따른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과제에 참여하고 계시는 인력분들께서는 '대학 산학협력단 (산학협력 초빙교수 직책, 비전임)' 과 '영리 기관 (원 소속 기관)' 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을 받고 있는 겸직 상태의 인원입니다.

(문의1)

본 인원들의 인건비의 경우, ' 대학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A% ', ' 영리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100-A% ' 와 같이 나눠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양 기관 모두 등록) 또한, 영리기관에서 받는 통상 임금의 경우, 1일 8시간 및 주 24시간 (3일) 로써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때, 본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여부 및 승인성 변경 필요 시의 변경을 통한 계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영리기관이 전문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명시된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소속 기관으로부터 **급여를 일부만 지급받고 겸직 승인을 받아**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하는 경우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 현금인건비 계상)(계속)



질문

(문의2,3)

(모든 문의 내용은 제48조 4항 3조가 있을지라도 하기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영리기관이 전문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2. 영리기관에서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3. 원 소속기관에서 100%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황이 아닌 것을 증명할 경우 (예시: 원 소속기관 50% / 산학협력단 50% 인건비 지급 문서 등) 인건비 현금 계상이 가능한지?



IRIS 답변

(문의2,3 관련)

고시 제48조제4항제3호의 취지는 혁신법 매뉴얼('25.4.) p.194 Q9에 안내한 바에 따라 **원 소속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현금 인건비 계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참여 연구자가 겸직 형태로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비상근 근무나 급여를 일부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비영리기관과의 근로 계약에 따라 과제에 참여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인건비 (초빙교원의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



질문

「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4항1,3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제48조 4항의 1에는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동일조항 3에 따르면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는 현금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리기관 소속의 임직원이 **고등교육법 제 17조에 적용을 받아 겸임 또는 초빙으로 임용된 때에는, 두 조항중 어느조항을 우선으로** 하여 인건비 현금계상가능여부를 판단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참여연구자가 **겸직으로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이지만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도 현금 인건비 계상이 제한됩니다.**

다만, 이때 영리기관 소속 여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계상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얼 (25.4.) p.191 증명자료, p.194 Q9. 참고)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인건비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 겸직 현금인건비 계상)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 ④의 3항의 규정해석 요청드립니다.

질의드린 규정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해당규정에 따르면 해당 참여인력이 영리기관에 소속되어 정기적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영리기관 소속임이 확인되는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뜻인지 영리기관 소속임에도 해당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는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먼저 연구비 사용 기준에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로 소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 (‘25.4.) p.191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내용 참고)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제3호의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 제한은 해당 연구자가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얼 (‘25.4.) p.194 Q9 참고)

따라서, 원 소속 영리기관(건강보험 직장가입자)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휴학생의 과제참여 및 인건비 계상)



질문

대학(A) 소속 학생이 휴학하여 창업을 하고 영리기관(B) 대표가 된 경우에,

1. A 대학의 연구과제에 외부참여연구원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소속기관확인서 제출)
2. 해당 과제에 참여 가능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형태 등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리기관 소속 외부참여연구자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2 관련) 정부출연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게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4항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인정을 득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연연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인정을 출연기관장의 인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2025.02.19 개정) 제48조 4항에 따르면 제3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법령 개정 사항 관련하여

1.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한 해석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드리며,
2. 비영리기관(대학)과 영리기관에 각 자체규정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후 겸직 중인 연구원에 대하여 비영리기관 R&D 과제 참여에 대한 인건비 지급 계상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 예를 들어, 근로조건 상 수~목요일 대학(산학협력단)에서 근무, 월~화 영리기관에서 근무하며, 4대보험을 각 기관별로 직장가입한 연구원은 대학에서 수행중인 연구과제에 참여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연구비 정산 시 근로계약 등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소속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혁신법 매뉴얼('25.4.) p.191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내용 참고) 따라서 **연구자가 영리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에 해당합니다.**

(문의2 관련) 원 소속 영리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비영리기관에 겸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현금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과제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혁신법 매뉴얼('25.4.) p.194 Q9 참고)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인건비 (외부인건비 미지급 참여 여부)



질문

혁신법 매뉴얼 상 원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 중견기업의 신규 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으로 매뉴얼 상 확인했습니다.**

타 영리기관 소속 직원을 현금으로도 현물로도 계상 불가할 경우, **참여 자체가 안되는것인지** 이미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받고 100%받고있으니 **인건비계상률 0%로 미지급 참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하신 상황과 같이 현금 또는 현물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인건비계상률 0% 또는 미지급인건비 계상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 총인건비계상률* = ①인건비계상률 + ②학생인건비계상률 + ③학생인건비지급률 +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 이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인건비계상률을 0%로 입력해야함(인건비계상률 0% 제한 여부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

인건비 (타기관에 적이 있는 본교 비전임 교원의 현금인건비)



질문

혁신법상 비영리기관은 초빙교원의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데요.

만약, 타기관에 소속을 두고 급여를 받는 자가 본교 비전임 교원(초빙/겸임 등)이 된 경우에도, 해당 교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가요?

현금인건비 계상 자체가 급여 재원이 불안정하거나, 소속이 없는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취지인 것으로 알고있어서요.



IRIS 답변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8조제4항에 따라 전임교원, 4대보험 직장가입자인 강사, 공무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은 현금 인건비 계상이 불가하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조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초빙교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해당 초빙교원이 **영리기관에도 소속되어 있는 겸직인 경우라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혁신법 매뉴얼('25.4.) p.194의 Q9.에 따라 겸직인 연구자에 대한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더라도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연구시설장비비 (재료비와 연구시설장비비의 차이)



질문

다름이 아니라, 기반구축사업의 **재료비**로 '오실로스코프' 장치를 구입하려던 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오실로스코프는 가속도센서와 같은 센서의 파형을 사용하기 위한 부대장치이고 가격은 약 4~6백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는 절삭가공 특성 추출을 위해 공작기계에 가속도센서를 붙이고, 그 센서의 파형 분석을 위해 오실로스코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와 같은 오실로스코프는 **재료비**로 구매하는것이 맞는지, **연구시설장비비**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문의하신 장치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별표 1의1]에 따른 연구장비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부대장비***라면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부대장비란 주장비의 일부분으로 규정하고, 주장비의 기본성능과 별도로 반드시 새로운 성능향상을 위하여 주장비에 부착하는 개념의 추가적인 장치



관련 규정

<참고 : 연구시설장비 포함대상과 제외대상>

구분	포함대상	제외대상
연구시설	- 대형장비운영시설(핵융합장치, 가속기 등) - 연구장비집적시설(나노랩센터,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 과학시료관리시설, 생물사육시설, 화합물은행 등) - 데이터센터(슈퍼컴퓨터, 빅데이터센터 등) - 관측/측정시설(기상관측시설, 천문측정센터 등)	- 연구개발활동 직접 지원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갖춘 형태의 일반시설 · 순수 연구동(실험동), 교육시설(도서관, 강의실, 교수실, 학생회관 등), 지원시설(행정동, 강당, 기숙사, 식당) 등
연구장비	- 시험, 분석, 계측, 생산, 교육(훈련) 등의 용도로 독립적인 연구개발기능을 수행하는 장비(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슈퍼컴퓨터 등) - 환경(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조성형 장비	- 장비의 운영과 관련 없는 소프트웨어 (office, Matlab 등) -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립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컴퓨터, 복사기, 사무용 가구, 케이블, 전선, 레일, 전산용품 등)



질문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 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IRIS 답변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관련 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 ①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②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 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③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 장비를 연구시설, 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연구시설장비비 (협약변경 승인사항)



질문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협약변경(사전 승인) 대상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규정 상 3천만원의 명확한 기준을 문의드립니다.

구입 장비 1대(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당 구매금액을 의미하는지, 개당 단가 및 수량에 관계 없이 장비 구입 1회 당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장비 A 1대 구입가 3000만원 vs 장비 B 10대 구입가 3000만원



IRIS 답변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5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과 연구재료비 범위)



질문

연구개발비-직접비-연구재료비 세목에 대해서, 연구개발 대상이 소프트웨어인 플랫폼 개발의 경우,
 가. 분석 및 테스트의 목적으로 타 기업의 유사한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 비용을 연구재료비로서 가용 할 수 있을까요?
 나.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재료비로서 가용 가능한 범위는 다음 중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1.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필요한 JIRA 등의 협업 툴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로서 가용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
2. 연구개발 대상(플랫폼 소프트웨어)에 필요한 IaaS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를 연구활동비나, 연구시설장비비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로서 가용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연구개발 목적이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 연구재료비 항목으로 타기업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에 필요한 협업 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하신 사항 중 **소프트웨어 개발관리에 필요한 협업 툴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로서 연구재료비로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는 연구활동비에 관련 세목이 있으므로 연구활동비로 계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항목 선택은 정산 주체인 과제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활동비 (연구근접지원인력 연구활동비 가능 여부)



질문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IRIS 답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관련 규정

연구근접
지원인력
연구활동비
사용범위

• 연구활동비 사용불가(출장비 등)

• 연구활동비 사용가능
(단, 연구개발과제 직접 관련된 내용에 한함)

연구활동비 (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가능)



질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에 따르면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출장비를 집행가능한데
간접비-연구지원인력비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지원인력도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수행기관 : 영리기관)

추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에는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과제 당 1명으로 제한하는데 혁신법 상 인원제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 1명 이상의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지원인력비가 지출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2호에 따라 영리기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5조제14항제1호에 따라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에서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



질문

출연연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 A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민간기업 B가 있습니다.

주관기관인 A과제에서는 B에 재직하고 있는 전문가(과제에는 참여하지 않음)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하고 싶어하는데,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속이라는 사유로 연구비 집행에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에 따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출연연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1조제1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와 출연연 내 동일부서에 속하지 않은 자(최소단위부서 기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출연연 내에 속하지 않은 연구자에 대해서는 동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한 조문을 바탕으로 혁신법 매뉴얼('24.4.) p.204에 안내된 내용에 따라 **참여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포함)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영리기관 소속 전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전문가활용비-최소단위부서)



질문

1. '대학의 경우 연구실'을 최소단위 부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직제 상 최소단위 부서는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입니다. 이런 경우 혁신법에 따라 최소단위 부서를 연구실로 봐야할지 아니면 학교의 직제상 최소 단위인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로 봐야할지 궁금합니다.
2. 최소단위를 학과(전공) 또는 연구소로 본다고 하면 A학과 교수님인과 동시에 B연구소 소속으로 연구소 사업을 수행 중이라면, A학과 타 교수님들은 전문가 활용을 할 수 없을까요?
3. 저희학교는 최소단위로서 학과(전공), 연구소, 자유교양 대학이 동일 선상에 있습니다. 자유교양대학의 경우 교수님 100여명이 소속되어 있으며 더이상의 최소단위로 분류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 자유교양대학 소속의 참여연구자가 있으면 자유교양대학 모든 교수님들을 전문가활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건가요?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0조(대학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라 대학의 장은 참여연구자*와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를 말함)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p.169~170)

* 참여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

대학의 경우에는 최소단위 부서를 직제가 아닌 **연구실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학과 내 복수의 연구실이 있다면 A학과 교수님은 A학과의 타 연구실 소속이 교수님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 자유교양대학의 경우에는 연구실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연구소와 자유교양대학을 최소단위로 보아 같은 소속 내 교수님들에게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연구활동비 (임상시험비의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가능여부)



질문

현재 연구회과제를 수행중이며, 연구과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임상실험을 진행예정입니다.
임상실험 피험자에 대한 피험비 지급이 발생할 예정인데,
임상실험 피험비가 연구활동비-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에 해당되는 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임상시험 피험자의 일부를 기관 내부 다른 부서 소속이면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집행이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임상실험 피험비는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해소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때 임상실험 피험비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즉, 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이라면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부서(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른 최소단위 부서)에 소속된 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피험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 40% 한도중 직접비란)



질문

연구활동비 내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계상 제한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의 '직접비'의 정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현물 및 기관부담금은 직접비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실은 확인하였습니다.

1) 직접비 = 총연구비-간접비

2) 직접비 = 총연구비-간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

상기 두가지 해석 중 어떤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의 연구활동비 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기준 적용 관련 '직접비'는 문의 내용의 '1)(총연구비-간접비)'과 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2조 제5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질문

최근 신규 공고문에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선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사가 수행중인 사업 공고문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어 기술도입비를 따로 계상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질의1) 수행중인 사업에 기술도입비를 현금으로 계상해도 되는지?

질의1-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제 68조 1항을 보면 현물의 경우만 나와 있는데 현금에 대한 별도 규정 내용은 없는지?

질의2) 현금으로 계상 시 총 연구개발비의 몇 %까지 계상해도 되는지?

질의3) 본 사업으로 기술도입비를 집행 후 해당 외부기술을 또 다른 당사 내부 사업, 타 과제 등에 적용해도 되는지?

*질의1, 1-1 요지: 협약 당시 기술도입비 계상을 하지 않았으나 전담기관 승인 없이 연구활동비 항목으로 집행가능 여부



IRIS 답변

(질의 1) **기술도입비는 현금 또는 현물 연구개발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입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8조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금으로 계상할 경우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질의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기술도입비 포함)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시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며,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득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구개발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 주체인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기술도입비 집행 후 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현물로 계상하는 것은 동 고시 제21조제4항제3호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계상이 불가합니다.**

회의비

(2024년 12월 1일 적용 사전결재제도)

(결재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 결재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승인의 범위: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면 되며,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기안자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수기 결재문서의 허용 여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단,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

(결재 시점)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전까지 완료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실제 회의가 사전 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첨부되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회의비 (사전결재 완료 시점)



질문

외부 인원이 참석하는 회의 중 사전 내부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식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기준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배포한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사전결재 시점은 '회의 시작 시점' 또는 '실제 사용시점' 중 늦은시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완료된 기안이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것으로 인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연구책임자가 기안하는 시점만 충족한다면, 사후에 결재권자의 승인을 득하여도 사전결재의 시점을 충족한다고 봐도 될까요?

EX) 2월 10일 13시 회의일정 - 연구책임자 회의 사전결재 2월 10일 09시 기안 - 사전결재 2월 12일 결재완료

위 사례의 경우 항상 인정되는 케이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사전결재 기안 시점이 충족한 경우, 사후결재 완료가 1일, 2일뒤..... 언제까지 결재가 완료되어야 되는것 인지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IRIS 답변

과기정통부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안내사항('24.11.13.) 이후 최종적으로 안내된 사항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사전 내부결재 문서의 기안을 완료하면 되으며, 결재문서가 회의비 중 식비 사용 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사후 결재의 기한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안자가 반드시 연구책임자 일 필요는 없으며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기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비 (비대면 회의 시 식비 가능여부)



질문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IRIS 답변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회의비

(수행기관 간 회의 시 식비 가능여부)



질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IRIS 답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봄**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간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함**
 - ※ 예)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회의를 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불가함.**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A, 공동연구개발기관 B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이지만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이 모두 A기관이라면(B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소속이 A기관인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불가함

회의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14.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비 중 식비는 본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15.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위해 사전 내부결재 시 반드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에도 연구책임자를 결재경로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직무대행자(참여연구원 등)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경로에 연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내부결재 시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로 갈음 가능

Q17. 회의비 중 식비 세부 사용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기정통부 공문 등)과 본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안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고시 제25조 제4항의 시행일('24.12.1.)부터 사용한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 적용됨

Q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자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혁신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출장여비 (국외출장비 중 기내식 차감)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연구활동비 공통사용기준) 7항-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하여야 한다.에 기내식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5조 제7항의 '출장지 관계기관'의 범위에는 이동수단을 포함되지 아니합니다.단, 고시 제 21조 제 1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직접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장비의 식비와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의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부분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1항, 제4항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 가.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질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의 출장 시,
주관기관 방문에 대한 참여기관 연구원의 출장여비 계상 및 집행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IRIS 답변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출장 시 해당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제4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출장여비

(자체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 선택)



질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체규정에는 준비금(비자, 여행자보험 등)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에는 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는데 연구자께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한다면 준비금을 연구비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선생님의 질의는 자체규정에는 없는 출장비 세부항목에 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장비 계상 시 공무원 여비규정을 선택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산정하는 경우라면 **자체규정으로는 계상할 수 없는 항목이라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관련 규정

- ②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의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중 큰 금액에 따라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음

※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하려는 경우 세부항목(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별로 자체규정과 공무원 여비 규정을 혼용하여 적용할 수 없음



질문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IRIS 답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으로서 이주비용, 체재비 등
-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음

소프트웨어활용비 (최소계약단위)



질문

- 연구개발과제번호: RS-2018-II180207
 - 당해사업년차: 2024(2단계 3년차)
 - * 2단계: 2022-01-01 ~ 2025-12-31
- 상기 과제 수행 관련하여 **소프트웨어활용비** 구독료를 1년 단위로 결제하고자 합니다.
- * **사용계약기간(1년): '24.12.09 ~ '25.12.08**
- 다만, '월' 단위(최소 단위) 구독료가 존재하여
이 경우 단계기간 내에서도 최소 단위로 집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10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프트웨어의 최소 단위 사용계약기간 적용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상황은 **1년 단위로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사용계약기간이 과제 기간 내이므로 최소 계약단위인 월 단위로 계약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구실 운영비 (연구환경유지비)



질문

연구실 운영비 사용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필요한데,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이지요?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10조 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해당과제 과업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1항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운영비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안 미제출)



질문

연구 개발 수행을 위해 설계 및 해석용 PC를 구축하고자 할 때, 연구실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협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 4호서식]'을 제출하지 않았는데, 승인성 협약 변경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협약 신청하면 될까요?



IRIS 답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 사용용도로 사무용 기기(PC)를 구입할 수 있으며,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제1항제6호에서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약 체결 이후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혁신법 매뉴얼(24.4.) p.205 참고)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고시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 과제 소관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한 협약변경 후에 사무용기기(PC) 구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 신설(추가) 및 변경 가능

연구실 운영비 (직접적인 연관성)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7호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냉난방기 구매에 대해 이전 답변주신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하고 연구자 개인 연구실 등에서 과제와 무관하게 사용하기 위한 냉난방기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①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구 그대로 ② 연구실(개인 연구실 및 개인용도가 아닌)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인정 가능한 것인지?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10조제7호의 연구실운영비는 직접비로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예시로 언급하신 '① 해당 과제 과업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성(연구실의 일정한 온도유지를 필요로 하는 과제 수행)만을 의미'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와 관련하여 '반도체특성화대학지원사업'의 신규 연구 사무실 구축을 위한 정수기(임대료),청소기,냉장고,공기청정기,가습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초기 계획서 상의 품목엔 없던 물품이라 사업 협약변경 후 계획서에 품목을 추가하여 비용 집행이 가능한가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이 세세하게 어떤 물품까지 허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IRIS 답변

직접비-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구입하는 기기, 비품 등은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정수기(임대료),청소기,냉장고,공기청정기,가습기 등의 물품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간접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11호 그 밖의 비용 중에서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으면 공공요금 정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경우 전력사용량이 많아 개별 장비에 별도 전기 계량기를 장착하여, 해당 금액만큼의 전기사용료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필요한 증빙과 유의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비영리 기관인 대학입니다.



IRIS 답변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별도 전기 계량기를 장착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연구장비가 여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개별 과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력 사용량에 근거하여 직접 산출할 수 없다면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연구활동비 (장비수리 부품을 연구활동비로 구매)



질문

연구 과제에서 구입한 장비가 아닌 학교에서 구입한 장비를 연구비로 수리하여 연구에 활용을 하고 싶은데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장비 수리비를 제외한 장비 수리 시 필요한 부품만을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이나 재료비, 장비비로 청구를 할 수 있나요?



IRIS 답변

문의하신 연구장비가 **하나의 연구과제 수행에 활용되는 것이라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제3호에 따라 연구 시설·장비비의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장비가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직접비(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간접비 또는 자체재원으로 사용 하여야 합니다.**



질문

파견근로자 활용비의 연구개발비 사용 항목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위 <기존 질의 참고 요청> 관련 답변(2021.2.2 등록)에서 파견근로자의 파견대가는 파견업체에 지급하는 연구개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로서 연구지원비(중 기관공통비용)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에서 "1.직접비 / 아.연구활동비 / 카) 그 밖의 비용"에 대한 사용 용도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복사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의하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활동비 사용이 인정되는데,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조 또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도 위 연구활동비 사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만약 연구활동비 항목에서는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일용직 활용비와 파견근로자 활용비의 사용 항목을 구분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RIS 답변

연구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 가능한 비용은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러 과제 수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출불가능한 비용은 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조 또는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임시 인력을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자로 활용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연구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비용이므로 간접비(연구지원비_기관 공통 경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의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중 그 밖의 비용의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참여 연구자 또는 전문가 외의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사회문제 해결형 R&D에 참여하는 일반국민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위한 용도입니다.

연구수당 (70% 한도 적용기간이 연차인지, 단계인지)



질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⑥항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 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Q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기준이 **단계기준인지 당해연도 기준인지 문의 드립니다.**

Q 2. 1단계 기간(2025~2026년, 1단계 기간은 2년) 중 2명 이상이 참여한 경우이며 2025년과 2026년의 각각 연도별 연구수당 계상액은 동일함.

1명의 연구자가 2025년에는 당해연도 연구수당 계상액의 80%를 수령하고,

2026년에는 당해연도 연구수당 계상액의 40%를 수령 시

2025~2026년 2년 동안의 총 연구수당 계상액의 60%를 수령하는 것이 됨. 따라서, 이 경우에 2025년도에 80%를 수령할 수 있는지요?



IRIS 답변

(Q1 관련) 혁신법은 단계정산이 원칙이므로 문의하신 연구비 고시 제26조제6항 또한 **단계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Q2 관련) 단계 내 특정 연차에서 1명의 연구자가 해당 연차 연구수당 계상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라 할지라도, **단계 기준으로 연구수당 계상액의 70% 이내에 해당한다면 고시 제26조제6항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질문

1. 최초 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혁신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궁금합니다.

처음엔 해당 규정을 현금인건비 감액 시 연구수당 보전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증액이 불가하도록 한 취지라고 이해하였으나, 다른 규정에서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 등의 변경은 통보사항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보만으로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하다면, 미지급 인건비 총액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무엇인가요?

2. 현금인건비 감액 후 미지급 인건비 증액을 통한 수정인건비 총액 보전(연구수당 보전 목적)

현금인건비 감액으로 인한 수정인건비 총액 보전을 위하여 미지급 인건비 증액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만, 이를 제재할 근거 또는 기준이 있는지요? 실무적으로 불인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시) 수정인건비 보전을 위한 미지급인건비 증액인 경우로 가정하였을때, 연구수당을 불인정 할 수 있는지 여부

변경전 : 현금인건비 100만원+미지급인건비 100만원→연구수당 40만원

변경후 : 현금인건비 10만원+미지급인건비 190만원→연구수당 40만원

3. 원래계획에 미계상된 미지급 인건비 증액

최초 협약 당시 제출한 원래계획서상 미지급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사전승인 없이 통보 만으로 미지급 인건비를 증액하여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는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미지급인건비의 취지와 협약변경(통보절차)을 통해 미지급 인건비의 증액이 가능한지**에 관한것으로 이해됩니다.

문의1) 미지급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1항의 연구수당계상을 위한 기준금액인 수정인건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연구수당 계상액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문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26조제4항에 따라 미지급인건비는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ㄴ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계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 고시 제 81조제3항에 따라 소관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시 정산 시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미지급인건비 계상률 포함)에 관한 정보 등을 요구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의 참여정도를 고려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문의3) 협약 당시의 원래 연구개발계획서에 미지급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승인 없이 협약변경(통보절차)을 통하여 미지급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IRIS 답변

연구수당 (인건비 집행액 변동과 연구수당 한도 변경)



질문

1. 단계 기간 내 인건비 예산 변경은 없으나 실집행 인건비가 예산 대비 적게 집행하였다면 집행 가능한 연구수당(상한)은 **실집행 인건비의 20% 이내인가요, 계상액(예산)의 20% 이내인가요?**

ex) 직접비 집행률이 80% 초과했다는 가정 하에,

인건비 예산액 10,000,000원

인건비 집행액 6,000,000원

연구수당 예산액 2,000,000원인 경우 집행 가능한 연구수당 상한액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할 때, 분자·분모의 직접비에 '위탁연구개발비'도 포함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RCMS를 사용하는 과제는 주관기관의 직접비(예산)에 위탁연구개발비를 포함하지 않아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시 위탁연구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으나

2) 이지바로를 사용하는 과제는 주관기관의 직접비(예산)에 위탁연구개발비 포함되어 있음.



IRIS 답변

답변1) 직접비사용비율이 80%를 초과한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정산 시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 이내로 연구수당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이 연구개발비 정산결과 **인건비 집행액이 6,000,000원으로 인정된 경우라면 연구수당은 인건비 집행액의 20%인 1,200,000원 내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답변2) 연구수당 지급 한도와 관련한 **직접비사용비율의 계산시 직접비 모수에는 위탁연구개발비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직접비사용비율의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혁신법 매뉴얼('23.3.) p.206에 안내되어 있으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산주체인 소관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수당 (인건비 계상률 0%인 경우 연구수당 가능 여부)



질문

1. 인건비계상률이 0%일 때(다른 재원으로 100% 인건비 받고 있는 경우), 미지급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즉 연구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건지 헛갈립니다.



IRIS 답변

총인건비계상률은 ①인건비계상률, ②학생인건비계상률, ③학생인건비지급률, ④미지급인건비계상률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참여연구자가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및 미지급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참여연구자가 **인건비계상률 및 미지급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더라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된 연구수당 총액 내에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구수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3. 연구지원인력,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님

Q4. 학생연구자는 연구수당의 지급대상인지?

-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은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포함)이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연구수당의 지급 대상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Q5. 직접비 사용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지급 가능금액이 달라지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은 현물을 포함하여 계산되는지? 현재 기관이 수행중인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마다 답변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021년부터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 일원화되었음
- 동 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의 계산식에서는 '직접비사용비율'로 명시되었으므로 현물을 제외하여야 함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단계 시작 시점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포함

Q7.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중 1차년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년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Q8.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위탁연구개발비 (한도)



질문

혁신법 매뉴얼 제10절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관련 문의입니다.

1. 위탁연구개발비 40퍼센트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에서 연구개발과제 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인지, 연차별로도 맞춰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 이라고 적혀있는데, 공동연구개발비도 제외한다는 문구가 왜 없는지 궁금합니다.



IRIS 답변

(문의1 관련)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단계별 정산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또한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단계 단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7조제1항 또한 **단계기간(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전체기간)에 대해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의2 관련) 문의하시는 공동연구개발비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계상하는 연구개발비 총액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약을 통해 별도로 연구개발비를 편성하여 사용합니다. 따라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 부과 예외 적용)



질문

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위탁연구개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부과(이하 “과세”) 처리함이 원칙이며, 부가가치세 면제(이하 “면세”)가 되는 예외사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상 이외의 면세 적용 기준은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부처의 재량이 적용될 여지도 없어, 저희 전문기관에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이외의 모두 과세로 위탁연구개발비를 처리함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수령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격에 따라 과세,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 과기부의 해석을 질의 드립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검토에 따라 과세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않은 등의 기관 특성을 가진다면 매뉴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면세를 적용하여도 되는지요?

일부 연구기관 및 위탁회계법인 등에서는 혁신법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주된 용역이 면세사업이므로 위탁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도 면세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은 혁신법이라는 범부처 공통 법령이 정해져있고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혁신법 매뉴얼에서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예외사항 이외에는 적용을 허용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기존 과기부 질의, 답변을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첨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조세당국의 소관’으로 답변을 주신 부분도 있어 매뉴얼에 원칙으로 명시된 사항에 대해 과기부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관리함에 있어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이행용역 성격 등을 불문하고 모든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제사 원칙이며,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에 대해서만 면세를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IRIS 답변

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는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별도의 예외를 둘 수 없는 것이며, 혁신법 매뉴얼('22.3.) p.189의 내용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 있는 부가가치세법 내용을 참고사항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혁신법 매뉴얼('22.3.) p.189에 언급한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 외에 부가가치세법 상 추가적인 면세 사유의 적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구를 수행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면세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 (과제수행전 출원한 특허에 대한 간접비 집행 가능)



질문

신약개발 주기에서의 임상단계 과제의 특수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의 성과활용지원비 취지 등을 감안하여, 임상단계 과제에 대한 **기존 특허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새로이 시작하는 신규 과제에서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시행령 별표 2.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신약 임상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특허는 기술적 차별화와 법적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출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선제적 취득 특허는 연구개발 성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제 연구기간 시작 이전에 기 출원·등록된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본 과제의 간접비-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성과활용비-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성과)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상황에서 **과제 시작 전 연구개발기관에서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기존에 수행하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라면 해당 특허권의 추가 등록과 유지 등을 위한 비용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제 시작 전에 기 출원·등록된 특허권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성과가 아니지만 해당 특허권의 등록, 유지 비용이 과제수행이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필요한 비용이라면** 직접비-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2025~2026년 적용할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상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개정되지 않았고, IRIS 시스템 상에도 비율이 업데이트 되지 않아 각종 과제 신청 및 협약 시 2025년 비율이 아닌 2023~2024년 비율을 적용하여 입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개정되면, 변경된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라 협약변경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당초 입력한 2023~2024년 비율을 계속 적용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23~2024년에 비해 2025~2026년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46조, 제63조에 따라 **간접비비율은 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상향 조정된 간접비고시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혁신법 매뉴얼(2025.4월) 참고).

간접비

(영리법인의 연구지원인력 직접비 사용 관련 문의)



질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25조에 따르면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출장비를 집행가능한데
간접비-연구지원인력비로 인건비를 받는 연구지원인력도 연구활동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수행기관 : 영리기관)

추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에는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를 과제 당 1명으로 제한하는데 혁신법 상 인원제한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어 1명 이상의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지원인력비가 지출될 수 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IRIS 답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6조제2호에 따라 영리기관에서는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5조제14항제1호에 따라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기관에서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연구인력 지원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1. 인력자원비 사용용도 중 '일시적 연구중단'의 범위는?

-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하던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등을 말함

Q2.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 대하여는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간접비비율을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높게 또는 낮게 조정할 수 있음
- (비영리기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7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수한 목적·성격을 가진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공모할 때 알린 방법에 따라 간접비비율을 낮게 적용할 수 있음
 - * 시설·장비 구축,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이전·사업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 (영리기관) 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보다 낮게 적용할 수 있음

Q3.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지?

-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임.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함

Q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 학생연구자와 산학협력단 직원을 평가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모든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역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산학협력단 직원 또한 연구지원인력에 해당한다면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간접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Q5.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에 흡수하게 될 경우 부당집행금액에 해당되는지?

-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비 사용이 원칙이므로, 연구개발비 회수대상임

Q6.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간접비를 과제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3조 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간접비 사용용도)으로 사용가능함

Q7.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 시점은?

-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던 당시에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새로 추가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면 됨

Q8.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하려는 경우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지?

- 비영리기관(출연연, 대학 등)이 과제수행 중 해당 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이 상향되거나, 협약 당시 사전 협의를 통해 고시비율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나 협약 당시 고시비율로 상향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변경 가능
- 다만, 간접비 고시비율이 하향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자체판단에 따라 소관 부처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 없이 변경 가능

Q9. 연구보안관리비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정보보안 활동을 위해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정보보호 SW구입,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망분리 등 정보보안관리비 비용으로 사용가능함